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40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 한준호 · 이재관 · 박상혁

차지호 · 김원이 · 신영대

정태호 · 김태선 · 김용만

전현희 · 장경태 · 이정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,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(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)을 공장에서 70%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·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,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·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의2 신설).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6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모듈러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·조립 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(이하 "모듈러주택"이라 한다)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모듈러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모듈러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·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 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, 인증절차,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도

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53조의2(모듈러주택의 건설기
	준 및 인증제도 등) ① 국토교
	통부장관은 표준화된 건축 모
	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
	에서 설치・조립하는 공법을
	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
	(이하 "모듈러주택"이라 한다)
	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
	<u>수 있다.</u>
	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듈러주
	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
	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모듈
	러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
	<u>있다.</u>
	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
	기관의 장은 모듈러주택을 공
	급하는 사업주체 및 모듈러주
	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
	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・세제
	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	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
	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
	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

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⑤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, 인증절차,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·용적률·높이제한을 완화할수 있다.